

기획특집 [4]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

자료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가축복지가 보장되는 축사밀도

가. 유기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나목, (2)항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 중 가축의 복지가 보장되는 축사밀도 등에 대한 조건은 <표 1>과 같다.



<표 1>

축종	성장단계별 또는 종류별	체중 및 단위	축사시설면적(㎡/두(수))	축사형태기준
한·육우	육성(비육)우	400kg이상	7.1	깔짚우사
	번식우	400kg이상	9.2	깔짚우사
젖소	육성우	450kg이하	10.9	깔짚우사
	건유우	두당	13.2	후리스톨우사
			17.3	깔짚우사
	착유우	두당	9.5	후리스톨우사
17.3			깔짚우사	
돼지	분만돈	두당	4.0	분만틀 돈사
	육성(비육)돈	60kg 이하	1.0	깔짚돈사
	비육돈	60kg 이상	1.5	깔짚돈사
	임신(후보)돈	두당	3.1	깔짚돈사
	웅돈두당		10.4	깔짚돈사
닭	육계	수당	0.1	깔짚평사
	산란성계	수당	0.22	깔짚평사
	산란육성계	1.5kg이하	0.16	깔짚평사
	종계	2.5kg이하	0.22	깔짚평사
양	면양	30kg이하	1.3	깔짚양사
	산양	30kg이하	1.3	깔짚양사
오리	산란오리	수당	0.55	깔짚축사
	육성오리	수당	0.3	깔짚축사
사슴	꽃사슴	100kg이상	2.3	깔짚늑사
	레드디어	170kg이상	4.6	깔짚늑사
	엘크	350kg이상	9.2	깔짚늑사

※ 반추가축은 축종별 생리상태를 고려하여 위 축사면적의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함.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인 경우 축사 시설면적의 2배 이상을 축사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 비반추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건강과 생리적 요구를 고려하여 축사이외의 활동공간 확보가 권장된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5호.무항생제축산물, 나목, (1)항 축사조건 중 축사밀도 등에 대한 조건은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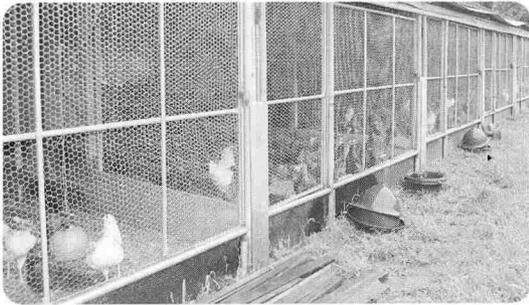
2. 산란계의 일조시간 연장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나목, (2)항, 제(가), 7)의 자연 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자연 일조시간이 14시간을 넘을 때에는

<표 2>

축종	성장단계별 또는 종류별	체중 및 단위	축사시설면적(㎡/두(수))	축사형태기준
한·육우	육성(비육)우	400kg이상	7	깔짚우사
	번식우	400kg이상	9.2	깔짚우사
젖소	육성우	450kg이하	6.4	깔짚우사
	건유우	두당	8.3	후리스톨우사
			13.5	깔짚우사
	착유우	두당	8.3	후리스톨우사
16.5			깔짚우사	
돼지	분만돈	두당	3.9	분만틀 돈사
	육성(비육)돈	60kg 이하	0.6	깔짚·슬러리돈사
	비육돈	60kg 이상	0.9	깔짚·슬러리돈사
	임신(후보)돈	두당	3.1	깔짚·슬러리돈사
	웁돈두당		9.7	깔짚·슬러리돈사
닭	육계	수당	0.042	케이지
			0.046	깔짚평사(무창)
			0.066	깔짚평사(개방)
	산란성계	수당	0.042	케이지
			0.11	깔짚평사
			0.025	케이지
			0.066	깔짚평사
종계	2.5kg이하	0.11	깔짚평사	
양	면양	30kg이하	1.3	깔짚양사
	산양	30kg이하	1.3	깔짚양사
오리	산란오리	수당	0.28	깔짚축사
	육성오리	수당	0.2	깔짚축사
사슴	꽃사슴	100kg이상	2.3	깔짚축사
	레드디어	170kg이상	4.6	깔짚축사
	엘크	350kg이상	9.2	깔짚축사

인공광으로 자연 일조시간을 연장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 일조시간이 1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인공광을 포함하여 일조시간이 총 1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확보 면적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다목, (1)항에 적용되는 초식가축의 축종별 두당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지, 사료포는 임차할 수 있으며, 계약을 통한 생산지도 재배 면적에 포함한다.

- (1) 한육우(생체 400kg 기준) : 초지 2,475㎡ 또는 사료포(답리작 포함) 825㎡
- (2) 젖소(생체 600kg 기준) : 초지 3,960㎡ 또는 사료포(답리작 포함) 1,320㎡
- (3) 면·산양(생체 30kg 기준) : 초지 198㎡ 또는 사료포(답리작 포함) 66㎡
- (4) 사슴(생체 100kg 기준) : 초지 660㎡ 또는 사료포(답리작 포함) 220㎡

다만,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

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재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포 면적의 일부를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육우는 374㎡/두, 젖소는 916㎡/두 이상의 초지 또는 사료포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시 사료 공급비율 확대 기준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바목, (2)항의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바목, (1)항에서 규정한 유기사료의 급여 비율을 10% 완화할 수 있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5호.무항생제축산물, 마목, (2)항의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 별표3의 제5호.무항생제축산물, 마목, (1)항에서 규정한 무항생제사료의 급여 비율을 10% 완화할 수 있다.

5. 사료내 GMO 함유기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바목 (4)항에서 규정한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비의도적인 혼입은 3%내에서 인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고시의 폐지) 유기축산물 인증 부가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06-20호)은 폐지한다.

유기사료 심사요령

1. 유기사료

심사자는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해 급여되는 사료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Codex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유기사료”라 한다.)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유기사료의 심사

가. 유기사료의 심사는 사료의 생산과정과 사료생산 포장, 초지 및 사료에 대한 적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유기농림산물 인증규정에 준하여 농약사용여부, 화학비료 사용여부, 토양중금속 오염여부, 사료종자의 GMO여부, 용수의 유해여부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입자 인증인 경우 해당 사료 및 사료생산 지역이 수출국 자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유기사료의 구분관리

가. 유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가 관행적 방법

으로 사료를 생산하거나 유기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로부터 공급을 받을 경우 관행적으로 생산된 수확물과 혼입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보관·수송·급여되어야 한다.

나. 유기사료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경우 심사자는 유기사료 보관창고의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 포장지나 운송용 톤백, 수송차량의 세척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유기배합사료

가. 유기축산물 생산농가가 사육에 필요한 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합사료형태로 외부에서 공급받을 경우 심사자는 배합사료 생산공장에 대하여 사료생산시설, 위생관리수준 등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료제조시설이 사료관리법(수입자 인증인 경우 자국내 사료관련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된 공장인지 여부
- 2) HACCP 지정을 받은 공장인지 여부
- 3) 생산된 사료는 성분등록 또는 자유판매인증(Free Sale Certification)을 받은 사료인지 여부

나. 국가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유기배합사료 및 제조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유기배합사료인 경우 심사자는 GMO·사료안전성검사 등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유기사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사료제조업체가 자국의 사료관련 법률에

의거 제조업을 등록하고 생산되는 사료가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생산·유통되는 사료인지 유무

※ 업체명, 공정, 제조업등록·허가서, 제품종류, 위치 등

- 2) 인증기준(해당규정) 및 인증서
- 3) 인증기관이 국가가 아닌 민간인증기관인 경우 동 인증기관이 수출국의 관련법 및 국제적 인증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 4) 해당 업체의 유기배합사료 관리체계 및 방법(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 유기배합사료의 원료는 국가나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산물(부산물)인지 여부
 - 일반 배합사료원료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잔류농약, GMO혼입율, 중금속, 곰팡이 독소,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의 잔류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잔류 및 혼입기준 참조)
 - 사료에 배합·첨가된 원료의 적정성 여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1 참조)
- 5) 필요할 경우 세부사항별 현장사진 등 첨부다. 유기배합사료 및 제조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 또는 생산된 유기배합사료인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 및 원료공급업체(농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은 유기사료 관리체계 적합여부, 유기원료 사용여부, 일반사료의

혼입여부에 대하여 다음 항목별 세부사항을 심사한다.

- 1) 유기사료(원료)에 대한 관리체계(프로그램)
- 2) 배합사료원료의 유기여부 확인방법
- 3) 원료입고·제품생산·제품저장·출하단계에서 비 유기원료 및 일반배합사료가 혼입되는지 여부 확인
- 4) 유기사료(원료)의 유해물질, GMO 등 검사여부
- 5) 배합사료 및 대두박, 옥수수 등은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GMO분석 실시
 - ※ 국내 사료관리법령에 의한 유기배합사료 성분의 등록을 필한 경우 관련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유해물질 및 GMO 혼입을 기준

1. 단미사료(곡류 및 곡류부산물)

- 잔류농약 : 불검출
- GMO농산물 혼입율 : 불검출
- 기타 : 유기농산물의 유해잔류물질 허용기준에 따름

2. 배합사료

- 잔류농약 : 사료관리법(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의 1/10이하
- 중금속 및 곰팡이 독소 : 사료관리법(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
-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 : 불검출
- GMO농산물 혼입율 : 불검출 ㉟